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

제정 2019. 5. 1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권한) ①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
②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363 조의 2 제 1 항, 제 542 조의 6 제 1 항, 제 2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(구성) ①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제 5 조(위원장) ①위원회는 제 8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소집권자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(소집절차)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최소한 회의 1 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(결의방법)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.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9 조(부의사항)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10 조(통지의무)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 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의사록)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2 조(자료요청 등)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.

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3 조(간사)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4 조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(2019.5.10)

이 규정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※ 관계법령

- ①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: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)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② 제542조의6 제1항 :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(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제542조의6 제2항 :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-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-의 경우에는 1천분의 5)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(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